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서식] <개정 2019. 3. 20.>

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**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**

귀하(귀사)가 년 월 일 신청한 '가산세 감면 등'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)

신청인	성 명 (상 호)		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 소 (사업장)			
□ 승 인	사유발생일	년 월 일		
	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가산세	○○○ 가산세 원		
	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가산세와 관련된 국세	○○○세 연도 기분 원		
	사 유			
□ 불승인	사 유			

끝.

발 신 명 의 직인

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: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 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협조자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)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전화( ) 전송( ) 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)